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제도의 합리적·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수시설의 운영환경과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행 배치기준 적용 시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또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업무가 소관부처인 환경부로 재이관됨이 확정됨('24.12.31.)에 따라 국가전문자격 운영 전문기관으로 해당 업무를 위탁하고자 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등(안 제50조)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및 급수관 세척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연면적 산정 시 주차장 면적을 제외하도록 하는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규제대상 모든 건축물 및 시설에 확대함.

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시행 업무 위탁기관 변경(안 제67조)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한국상하수도협회로 변경함.

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 변경(안 별표 2)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제도 시행('06.12) 이후 정수시설의 운영환경과 근무여건 등 변화된 요건을 반영하고 정수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설규모별 배치기준을 합리화함.

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별표 5)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누적 회차 적용 기간을 정하여 가중 처분의 누적 기준을 명확화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고용노동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1조제1항에서 같다)”로 한다.

제67조제6항제1호 중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한다.

제6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7조제6항 및 제8항”을 “제67조제6항”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 제1호나목 중 “가목에 따른”을 “가중처분 적용”으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적발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7조 및 제67조의2의 개정규정

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수도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0000.00.00>

시설규모별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제34조 관련)

구분	시설규모(일)	배치기준	비고
가	50만 ^{m³} 이상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2명 이상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3명 이상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5명 이상	
나	25만 ^{m³} 이상 50만 ^{m³} 미만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명 이상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3명 이상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4명 이상	
다	10만 ^{m³} 이상 25만 ^{m³} 미만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명 이상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2명 이상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4명 이상	
라	5만 ^{m³} 이상 10만 ^{m³} 미만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명 이상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2명 이상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3명 이상	· 1급 1명 이상 · 2급 1명 이상 · 3급 2명 이상
마	2만 ^{m³} 이상 5만 ^{m³} 미만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명 이상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명 이상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2명 이상	· 2급 1명 이상 · 3급 1명 이상
바	5천 ^{m³} 이상 2만 ^{m³} 미만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명 이상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명 이상	
사	5백 ^{m³} 이상 5천 ^{m³} 미만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명 이상	

비고

1. 라~마 범위에 해당하는 시설 중 소독처리만 한 후 바로 공급하거나, 완속여과 후 공급하는 시설은 비고란에 해당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으로 적용한다.
2. 마~사 범위에 해당하는 시설 중 원격감시·제어를 통해 정수장에 별도의 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운영이 가능한 시설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명을 2개 정수시설까지 중복하여 배치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0조(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저수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은 제외한다.	제50조(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등) ① ----- ----- ----- ----- ----- --. ----- ----- -----.
1.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인 건축물이나 시설	1. ----- ----- -----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1조제1항에서 같다) -----
2. ~ 10. (생략)	2. ~ 10.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6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 ⑤ (생략)	제6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⑥ ----- ----- -----.
1. 법 제2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	1. -----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

자격증 발급 신청의 접수, 자격 요건의 확인 및 자격증(환경 부장관 명의로 된 자격증을 말한다)의 발급 1의2.·2. (생 략) ⑦ (생 략) ⑧ 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제2 항에 따라 법 제24조제1항에 따 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 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한 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 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제6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67조제6항 및 제8 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 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 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 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 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 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4. (생 략)	<u>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 --</u> ----- ----- ----- 1의2.·2.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u><삭 제></u> 제6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7조제6항----- ----- ----- ----- -----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지속가능전략담당관	
연 락 처	(044) 201 - 7121